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549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참 조 조 문

지적법 제25조,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5493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0. 21 선고 98나42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AA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BA)

【피고, 피상고인】 화C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BB)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10. 21. 선고 98나425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그 도근점이 망실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인 도근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 주위에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근점이 새로 설치되었다면, 그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경계복원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2588 판결,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들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니, 원고들 소유의 부산 ○○구 부암동 산 00-0 임야 1정 2단 5무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쓴다)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산 00-0 임야 7,934㎡ 및 같은 ○○동 00-0 답 922㎡ 사이의 경계선은 일제시대때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법에 의하여 측량되어 등록될 때 생겨난 것으로서 그 후 그 도근점은 6. 25전쟁 등으로 망실되었고 1995년 및 1998년 무렵 새로운 도근점이 설치되었는데 그 도근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하여 측량한 최DC, 강DA의 각 측량감정 결과에 따르면 같은 ○○동 00-0 답 922㎡와 그 오른쪽 옆에 위치한 같은 동 산 00-0 구거가 그들 토지 오른쪽에 위치한 임야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도근점이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니, 1995년 및 1998년 무렵에 설치된 그 도근점이 이 사건 임야 주위의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으로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감정결과들도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경계복원측량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은, 같은 ○○동 00-0 답 922㎡는 1970년 무렵부터 채소밭으로 이용된 사실, 이DD가 1975. 11. 24.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45㎡를 같은

○○동 00-0 답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후 구승회, 김DE, 심DB가 전전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1983. 7. 12.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75. 11. 24.로부터 20년이 지난 1995. 11. 24. 이 사건 임야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